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법을 옳바로 지키도록 하자면 그들에게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1폐지)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는것은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 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였을 때 가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자면 불법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허물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직접적이며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침해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다면 그것이 위법성을 띠는가 띠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침해된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침해행위가 위법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침해행위의 위법성은 그것이 법이 규제하고있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특성이나 성질이다. 법이 규제하고있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는것이 적법이며 그와 어긋나는것이 위법이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은 침해행위가 민법규범과 그와 련관된 법규범이나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특성이나 성질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로 표현된다.

손해보상법에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침해행위자체의 위법성을 의미하며 행위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행위결과자체는 일종의 사실적인 상태 즉 피해자의 재산이나 인신에 불리익으로 되는 사실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적인 상태는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조성될수도 있고 객관적인 자연현상(실례로 불가항력적사유)에 의하여 조성될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할 침해행위와 객관적인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성질이나 정도에서 같은 손해결과를 조성할수 있으나 이러한 객관적인 손해결과만으로는 그것이 위법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인가를 명백히 알수 없다.

다른 부문법 즉 행정법이나 형법 등에서 위법성을 론의할 때에는 행위의 위법성만을 론의하고 행위결과의 위법성은 론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형사사건들에서 설사 행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행위자에게 일정한 법적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설명 할수 있다. 일련의 형사사건들에서는 행위자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감행한 경우 행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죄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운다.

불법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우는데서 불법침해행위와 손해결과는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민사책임성립조건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은 침해행위와 법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며 손해결

과와 법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침해행위는 위법성을 띠고있지만 일련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을 띠지 않는것도 있다. 실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행위는 그자체가 다른 당사자의 인신이 나 재산을 침해하는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니라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된다.

침해행위가 위법성을 띠는가 띠지 않는가 하는것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법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당사자의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위법 으로 판단할수 있다.

공화국 민법이나 손해보상법 등에 규제된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상권리와 리익, 공민들의 인신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것이 위법이다. 다시말하여 다른 당사자의 인신상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생명이나 건강,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침해한 경우 위법으로 된다. 만일 다른 당사자의 이러한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위법성조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되며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공화국손해보상법 제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제하고있다.

여기에서 류의할 문제는 현재 존재하고있는 민사적권리와 리익뿐아니라 앞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가질수 있는 민사적권리와 리익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것이다. 현재민사적권리와 리익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조건부적법률행위와 같이 앞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가질수 있는 권리와 리익도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앞으로 기대되는 권리를침해한것도 민사책임을 져야 할 근거로 된다.

그러므로 법이 보호하는 민사적권리와 리익에는 현재 존재하고있는 민사적권리와 리익뿐아니라 앞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가질수 있는 민사적권리와 리익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한것도 위법으로 된다.

또한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법으로 판단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은 사회주의사회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일반적인 행동질서이다.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사회주의사회의 존재와 발전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별도의 보충적인 위법성판단기준으로 삼을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보충적인 위법성판단기준으로 되자 면 고의와 같은 주관적인 허물조건과 결합되여야 한다.

공화국민법에서는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인정된다고 규제하고있다. 민사행위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로 된다. 행 위자의 행위가 설사 현재 존재하는 법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주의적생활규 범에 저촉되면 무효로 되고 해당한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침해행위가 비록 현재 존재하는 법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 도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위반하였다면 위법성을 가진것으로 인정된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헌법, 형법, 행정법,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기타 임의의 실체법들을 위반한 경우에도 론의할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공화국법체계에서 어떤 법이든 민사법률관계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확인하고 보호 하며 행위의무에 대한 법적규제의 내용만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이러한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것은 위법적인 침해로 된다.

침해행위가 위반한 법에는 민사법뿐만아니라 각종 행정법규, 행정규정, 지방인민위원 회결정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규 및 규정에 민사법률관계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확인 하고 그 보호를 위한 행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적규제내용만 있다면 이러한 법규, 규정을 위반한 침해행위는 위법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타 부문법들과의 련관속에서 위법 성을 론의하는것은 법집행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임의의 침해행위에는 보통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와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민법상의 위법성을 가지며 환경오염행위가 행정법규범이나 그밖의 법규정 등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위법성을 가질수 있다.

실례로 환경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이 침해받았다면 행정법상의 위법으로 인정되여 행정법상책임을 지울수 있고 그러한 환경오염이 재산상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된것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한 위법적인 침해이므로 민법상책임도 지우게 된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뿐아니라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론의될수 있다는것을 옳게 인식하는것이다.

법규범과 규정이 모든 사회관계를 구체적으로 다 규제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립법자는 총체적으로 일부 법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나라에서 민법의 기본원칙은 민사관계에서의 립법준칙, 행위준칙, 재판준칙으로 되며 재판기관이 독자적인 사법활동을 진행하는데서 기준으로 된다. 때문에 침해행위의 위법성은 구체적인 법규범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아니라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 우에도 론의할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하는 재판소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그것을 위반하였다면 그 행위 역시 위법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례로 공화국민법상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을 들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민들은 소비품만을 소유할수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생산수단을 소유할수 없다. 그런데 어느 한 공민이 이러한 민법상원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자기의 로력과 기술, 자금으로 생산수단을 제작한 경우 그것은 적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위법적인행위로 인정되여 몰수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민사관계에 옳게 적용함으로써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하고 온 사회 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것이다.